

수석부회장, 부회장 및 감사 선출규정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사단법인 전력전자학회(이하 ‘학회’라 함) 정관 제13조 1항에 따라 수석부회장,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수석부회장 및 부회장 후보 등록)

- ① 수석부회장 후보 및 부회장 후보는 직선 평의원으로서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 선출 선거일 15일 전까지 학회 사무국에 등록하여야 한다. 단, 수석부회장 후보는 평의원 5인 이상, 제4조 2항에 따르는 부회장 후보는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등록하여야 한다.

제3조(수석부회장 선출)

- ①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수석부회장을 선출한다.
- ② 선거 당일 출석인원에는 사전투표자도 포함한다.
- ③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 득표자 2인으로 2차 투표를 하여 다 득표자를 수석부회장 당선자로 한다. 단,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.
- ④ 수석부회장 후보는 선거 당일 간단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
제4조(부회장 선출)

- ① 2인 이내의 부회장은 다음 2항에 따라 선출하고, 나머지 부회장은 신회장단에 위임한다.
- ② 출석 평의원은 2인 이내의 후보를 기명하며, 상위 득표자 2인을 부회장 당선자로 한다. 단, 2위가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.
- ③ Editor-in-Chief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하며 Editor-in-Chief의 선출은 JPE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른다.

제5조(감사 선출) 감사 2인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한다.

부 칙

1. 본 규정은 2001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2. 본 규정은 2009년 9월 12일부터 일부개정 시행한다.
3. 본 규정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일부개정 시행한다.